

提案制度의 由来와 運用

〈VII〉

—美國의 職務發明制度를 中心으로—

① 大統領命令 第10096號의 運用에 대한 行政命令 第5號 內容(1951. 4. 26.) 〈2〉

第 8 條 特許의 保護 1. 政府機關은 本命令 第 6條의 2의 ① 또는 ②의 範疇內에서 이루어진 發明이라고 決定되었을 때는 곧 前記 發明을 위하여 特許의 保護가 合衆國안에서의 要求與否를 決定한다.

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와 發明者의 各 權利에 관한 論爭으로 本條文에 規定된 置處를 늦추어서는 안된다. 本명령 제6조 2의 ② 範疇안에 들었을 경우 전기의 특허보호를 받으려는 기관의 조처에 대해서는 發明者의 同意를 條件으로 한다.

2. 發明에 관한 정부와 被僱者의 各 權利를 결정함에 있어 本명령 제6조 2의 ①, ②가 適用되느냐의 與否論爭이 벌어졌을 경우 當該 政府機關은 會長의 그 논쟁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合衆國안에서 특허보호의 요구여부를 결정한다.

만약 機關이 特許出願을 해야 한다고 결

정되었을 때는 本명령 제6조 2의 ②에 明記되어 있는 權利를 行使한다. 그러나 이는 회장이 同條 2의 ①에 明記되어 있는 權利를 取得한다는 결정을 妨害하는 것은 아니다.

3. 정부기관이 本명령 제6조 2의 ②에 따라 發明의 權原을 僱用자에게 留保하도록 결정했을 경우 그 기관은 特許出願을 하고 회장에 의해 결정이 되는 再審査할 동안 2의 ①에 明記되어 있는 權利를 정부가 취득하도록 뒤에 회장이 결정하는데 대하여 방해가 되지 않고 2에 규정된 權利를 行使한다.

4. 정부僱用자에 의해 이룩된 發明에 대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특허의 보호가 요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관은 國家의 安全이나 國民의 健康, 安全, 福祉에 대해 考慮함을 條件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동시에 發明에 관한 다음 情報를 회장에게 보고한다.

① 發明의 簡潔한 記述

② 發明者의 姓名과 僱傭上의 身分

③ 發明의 一連番號와 名稱 및 出願書가 提出된 日字

5. 정부기관이 合衆國에 發明의 權原을 부여

하고 본명령 제6조 2의 ①에 규정된 情況 아래서 이루어진 발명에 관하여 국가의 안전, 일반국민의 건강, 안전이나 福祉에 대해 고려함을 조건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을 때는 그 결정과 동시에 발명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.

- ① 満足할 만한 재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충분하고 詳細한 발명의 記述
- ② 발명자의 說明과 雇傭上的 신분
- ③ 기관의 결정과 그 이유의 說明
회장은 만약 정부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判斷되면 국가의 안전, 일반국민의 건강, 안전, 복지에 대해 고려함을 조건으로 특허출원을 시키거나 또는 그 발명을 충분히 公開시킬 수가 있다.

다만 農務長官의 承認없이 農務省의 使用者에 의해 이루어진 種類의 植物에 관한 발명이나 특허출원은 할 수가 없다.

6. 앞으로 정부피용자에 의한 발명이 특허되고 그에 따라 정부기관이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권리, 권원, 이익을 保有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特許證의 交付와 동시에 기관은 다음의 정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.

- ① 발명의 抄錄
- ② 발명자의 성명, 고용상의 신분
- ③ 특허증의 寫本
- ④ 정부의 발명에 대한 권리, 권원, 이익의 性格과 範圍에 관한 說明書

第9條 報告의 形式 회장은 본명령에 규정되어 있는 報告를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形式을 결정한다.

第10條 連絡 각 정부기관은 會長 事務局과 交涉하기 위해 기관레벨의 連絡官을 任命한다. 다만 陸·海·空軍省은 각각 各 省에서 連絡官을 임명하는 規定을 制定한다.

第11條 命令의 公告 각 정부기관은 본명령의 規定을 使用者에게 公告하는 適當한 準備를 시킨다.

第12條 取消 1950년 9월 6일자 行政命令은 본명령의 規定에 의해 代替되며 본명령은 將來에 公布될 때까지 有效하다.

이상의 規定은 여러가지 特徵이 있다.

① 정부의 職員發明의 권리의 歸屬에 대해 慎重한 配慮가 되었을 뿐 아니라 發明者主義原則이 基本이 되어 있는 점

② 使用者발명에 대해 권리, 권원, 이익을 區別하고 使用者에게 歸屬된 후 국가의 實施권과 關係를 자세히 規定하고 있는 점

③ 권리, 권원, 이익이 使用者에게 귀속된 實施權만이 정부에 供與되는 경우에는 國內外에 모두 적용되는 점

④ 발명에는 특허발명뿐 아니라 특허가 부여될 技術 등도 포함되며 또한 意匠도 對象으로 하고 있는 점

⑤ 회장이 再審査를 할수 있도록 정부기관으로부터의 提出書類, 形式이나 方法까지 자세히 規定하고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회장에게 抗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점

⑥ 발명자와 정부기관 사이에 권리에 관한 紛爭이 생겼을 경우에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나 이 경우의 정부기관의 조처에는 발명자의 同意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점

⑦ 秘密로 한다든가 또는 특허를 公開하는 決定權에 대한 회장의 權利限界를 規定하고 있으나 農務성직원의 식물에 관한 발명의 取扱은 例外規定을 두어 農務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점

⑧ 정부의 각 기관에 특허담당 連絡官을 두고 있는 점

이 連終官 制度는 美國뿐이 아니라 西獨, 日本 등에서도 重用하고 있다. 특히 서독에서는 1957년 7월25일자로 「被傭者의 發明에 관한 法律」을 公布 施行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미국의 連絡官과 같은 職責을 「發明者 顧問」이란 條項을 두어 취급하고 있다. 또한 蘇聯에서도 「發見, 發明 및 合理化提案에 관한 命令」(1959. 4. 24)속에 職場이나 職域內에 專門從事者를 두어 특허 連絡官의 役割을 擔當시키고 있다. <完>